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용훈(기소),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호(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2. 10. 선고 2024고단118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우회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하던 피해자 한 명에게는 12주, 다른 한명에게는 2주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차량의 보험사에서 피해자 M에게 2,600만 원,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험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보험사에 약 7,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 이후의 일부 정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9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_____

 판사 김배현 _____

 판사 정현서 _____